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43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이철규 · 서명옥 · 박준태
송언석 · 조지연 · 김위상
엄태영 · 신동욱 · 김은혜
박상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광업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 신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광업의 발전과 광업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업의 발전과 광업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연구
2. 광업권 설정 및 채굴계획 인가에 필요한 지원
3. 협회 회원에 대한 교육훈련
4. 광업 관련 법률 자문 등 민원 처리
5. 광산근로자의 자격 관리
6. 광업권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지원
7. 광업 관련 기계 설비의 관리 및 임대 지원
8.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9.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의 공익사업과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지복구를 위한 예치금의 이행보증
2. 광산 피해 또는 재해 보상보험
3. 산업재해 보상보험
4. 광업 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5. 그 밖에 조합원의 광업 활동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공제 및 융자
6. 광업 활동 관련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공제 및 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8.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의4(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9조의5(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89조의6(법인격 등) ①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7(지도·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광업협회는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한국광업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9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광업의 발전과 광업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u> <u>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u>1. 광업의 발전과 광업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연구</u> <u>2. 광업권 설정 및 채굴계획 인가에 필요한 지원</u> <u>3. 협회 회원에 대한 교육훈련</u> <u>4. 광업 관련 법률 자문 등 민원 처리</u> <u>5. 광산근로자의 자격 관리</u> <u>6. 광업권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지원</u> <u>7. 광업 관련 기계 설비의 관리 및 임대 지원</u> <u>8.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u>

<신 설>

9.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의 공익사업과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지복구를 위한 예치금의 이행보증
 2. 광산 피해 또는 재해 보상보험
 3. 산업재해 보상보험
 4. 광업 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5. 그 밖에 조합원의 광업 활동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공제 및 융자
 6. 광업 활동 관련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공제 및 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8.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의4(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89조의5(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신 설>

<신 설>

제89조의6(법인격 등) ①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7(지도·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